

의안번호	2125519
의 피 인	김영선 의원
회 답 일	2023. 12. 27.
추계번호	23A48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곤란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확정된 때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의무 소멸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 (현행)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신설) ④ 「국세징수법」 제106조의2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때¹⁾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생계곤란자의 체납

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 안 제106조의2(결손처분)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법인 제외)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영위한 사업의 최종 폐업일이 1년을 경과한 경우
2.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무재산 또는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경우
3.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전 1개 과세연도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를 경과한 체납
5.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이나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 사람, 조세범처벌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국세기본법상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국세수입 및 강제징수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의 적용대상인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생계곤란자의 체납액 규모 및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액의 추정이 필요함

- 추가 재정소요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의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곤란자의 국세 체납액 규모 ×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비율

- 다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520호)의 특정 요건 중 일부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통계가 부재한 점, 해당 체납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최종 결손처분 비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권아영
추계세제분석관	태정립
연락처	02-6788-4652
	jitae@nabo.go.kr
